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1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김상욱・김선교・조지연

박준태 • 박덕흠 • 김예지

최은석 · 강대식 · 김기현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화재 등의 통지를 받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자
-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제5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에"를 "제19조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생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②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화재 등의 통지
	를 받는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 ② (생	제5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
<u>한다.</u>	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
	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2항에</u>	제57조(과태료) ① <u>제19조제3항에</u>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	
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